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401

발의연월일: 2020. 7. 8.

발 의 자:김미애·박덕흠·최승재

이종배・박 진・홍석준

태영호 · 김승수 · 김 웅

최춘식 · 김정재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군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며, 군검사 등 군수사기관은 부대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발생한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을 통해 군의 조직적인 은폐 및 축소가 드러나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으나, 군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군검찰이 부대의 장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독립적 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군형법상 성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 및 군검사·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(안 제2조 및 제228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죄"를 "죄(「군형법」 제92조 및 제9 2조의2부터 제92조의8까지의 죄는 제외한다)"로 한다.

제2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과정에서「군형법」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8까지의 죄를 범한 사건을 인지한 경우 에는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군사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「군사법원법」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·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신분적 재판권) ① 군사법	제2조(신분적 재판권) ①
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<u>죄</u> 에	<u>ব</u>
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.	(「군형법」 제92조 및 제92조
	의2부터 제92조의8까지의 죄는
	제외한다)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228조(군검사, 군사법경찰관의	제228조(군검사, 군사법경찰관의
수사) ①·② (생 략)	수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
	범죄 수사과정에서「군형법」
	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
	조의8까지의 죄를 범한 사건을
	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
	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.